

조사기관에 대한 등록제한기간(제27조제2항 관련)

I. 일반기준

1.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중한 등록제한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등록제한기간의 2분의 1 범위까지 더하여 처분할 수 있되, 그 합산한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.
2.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할 때에는 그 등록제한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.

II. 개별기준

위반행위	관련 법조문	등록제한기간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사기관으로 등록한 경우	법 제2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	3년
2. 고의나 중과실로 유물 또는 유적을 훼손한 경우	법 제2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	3년
3. 고의나 중과실로 지표조사 보고서 또는 발굴조사 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	법 제25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	2년
4. 별표 4 I. 일반기준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	법 제25조제1항제7호 및 같은 조 제2항	6개월